

“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” 결정 유보

- 추가 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을 60일 연장, 8월 11일까지 결정 예정 -

-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(원장 조우석)은 구글 사(社)가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(1/5,000 수치지형도)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*하고 처리기간을 60일 더 연장(~8.11, 공휴일 제외)하기로 결정하였다.

* '16년도에도 국외반출 처리기간을 연장하고,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반출 불허로 최종 결정('16.11.18)한 바 있음

- 이번 결정은 5월 14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*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다.

* 국토지리정보원장(위원장), 과기부, 외교부, 통일부, 국방부, 행안부, 산업부, 국정원 및 민간위원(1인)

- 협의체는 그동안 관계기관은 물론 구글 사(社)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. 그 결과,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등에 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.

- 향후 공간정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8월 11일까지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.

담당부서	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	책임자	과 장	김형수	(031-210-2604)
		담당자	사무관	최민규	(031-210-2673)
		담당자	주무관	김승용	(031-210-2689)

□ 관련법령

▶ (근거 법령)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제21조
「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기준」, 「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」

○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**기본측량성과**(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) **국외반출을 금지**

* 예외적으로 외국정부와 기본측량성과 교환, 국제회의시 자료 활용, 관광 홍보용 지도제작, 보안성 검토를 거친 일부축척의 지도 등 일부의 경우 반출 가능

- 다만, **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국외반출 협의체***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반출 가능

* 국토지리정보원장(위원장), 과기부·외교부·통일부·국방부·행안부·산업부·국정원의 4급 이상 공무원, 원장이 위촉하는 1명 이상 민간위원

□ 처리절차

①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신청·접수

* (신청서류) 허가신청서, 보안각서, 반출내용물 등



② 관련 부서 또는 기관 의견조회

* (대상기관) 협의체 부처, 본부·우리원, 공간정보산업진흥원, 공간정보산업협회,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, 학회 등



③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

* (위원) 원장 및 각 과장, 본부 공간정보제도과장

* 위원회에서 협의체 상정·의결시



④ 심사 결과 통보

* 자체 심사 : 10일內 / 협의체 심사 : 60일內

③-1 국외반출 협의체